

〈표 21〉 재정분석지표상의 가용재원의 내역

구 분	항 목	검 토 의 건
가용자원(A)	· 자체사업비 · 예비비	· 자체사업비와 예비비를 가용재원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
세출총액(B)	· 일반회계세출결산액	
가용자원율(%)	· 가용자원/세출총액×100	

〈표 22〉 실질적 투자가용자원 분석 틀

구 분	대 상 경 비	금액	구성비	세세항연계
일반회계 예산 규모(A)			100%	
최소경상필수경비(B)				
① 인건비 및 경상경비	· 인건비와 경직성경비 전액			경상예산 (100)
② 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	· 국고, 시·도비보조금과 양여금 및 지방비부담액			보조사업 (210)
③ 채무상환 및 이자	· 지방채·채무부담행위상환 및 이자전액			채무상환 (300)
④ 예비비 등 법정의무경비	· 법령·조례 등에 의한 의무적부담경비(교육재정지원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, 재난재해관련 경비 등) 등 예비비등 전액			예비비등 (400)
⑤ 계속사업비	· 자체사업중 계속사업			자체사업 (220)
실질적 투자가용자원(C) (C = A - B)	· 매년 일반회계 예산중 경상적이고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신규재정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라 판단함			

책을 수립하게 된다. 이 경우 추계의 방법과 정확성에 따라 세입추계 및 경상지출 경비절약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용재원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.

둘째,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에 의한 가용자원 산출을 들 수 있다. 이는 세입합계(자체재원, 의존재원)에서 세출합계(경상비, 의존재원사업, 채무상환, 예비비 등)를 차